

규제사항 업데이트 2021년 3월-5월

mazars

서론 **주요 개정 사항**

이번 업데이트는 2가지 주요 소식인 ESG (환경, 사회, 기업구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초, 금융위원회는 ESG 정보의 의무 공개를 시행하였고, 2025 ~ 2030년 동안 상장 기업을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한국의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기관의 최근 계획에 해당합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리더들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한국과 유럽 규정 사이에 이루어진 적정성 논의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공식 발표는 한국과 유럽 연합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업데이트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세법 개정사항, 탄력근로제 및 감사인 선임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업데이트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세법 개정사항 **주요 세법 개정사항**

대손 사유 추가 (회수 불능 해외채권)

현행 	개정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대손 사유 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현행과 동일 추가: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사유 규정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7일, 2020년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함. 동 시행령은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 시행되어 적용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현행	개정
	신설: 배당소득의 추가 규정 • 집합투자증권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동 시행령은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적용함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사후관리 사항 변경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사항이 변경됩니다. 2019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20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추징이 없으며,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에 추징은 하지 않고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후추징여부를 판단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고용유지를 계속한다면, 총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시행.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4 Mazars 규제사항업데이트

세법 개정사항 **주요 세법 개정사항**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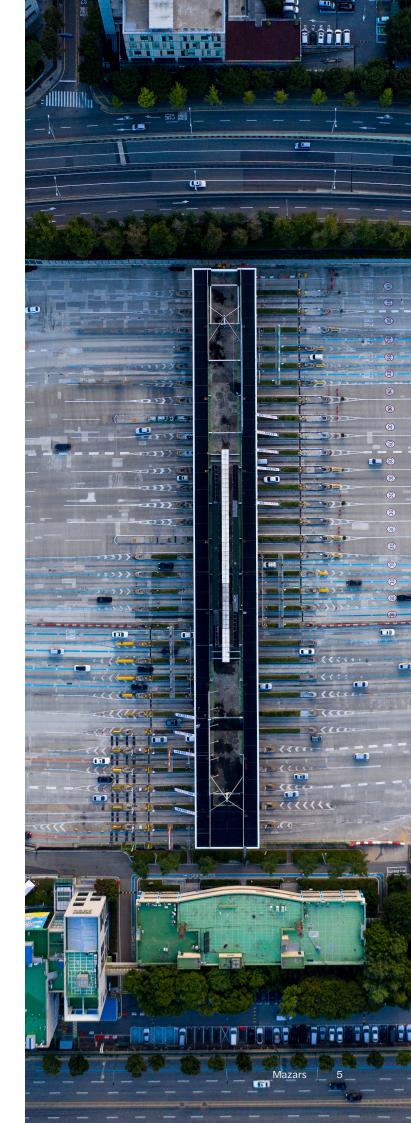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개정 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그 종가에 20%를 할증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량매매의 방법: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방법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영권 이전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주가 변경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 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거래

*2021년 2월 17일 시행. 해당 시행일자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체결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이 2021년 1월 29일부터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기업공시 **기업부담 경감**

감사인선임위원회

신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중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는 법령에 따라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
- 기관투자자 위원과 동일하게 채권 금융회사의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 * 내부위원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 (기관 투자자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이상으로 구성

적용시기: 2021년 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부터 적용 가능

기업공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은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
-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공시항목 40% 감소)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항목 확대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기준 마련 등
-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2025년) 자율공시 활성화 → (2025~2030년) 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화 → (2030년~) 전(全)코스피상장사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 기술특례 상장법인, 국내상장 역외지주사, 영구채 관련 공시 강화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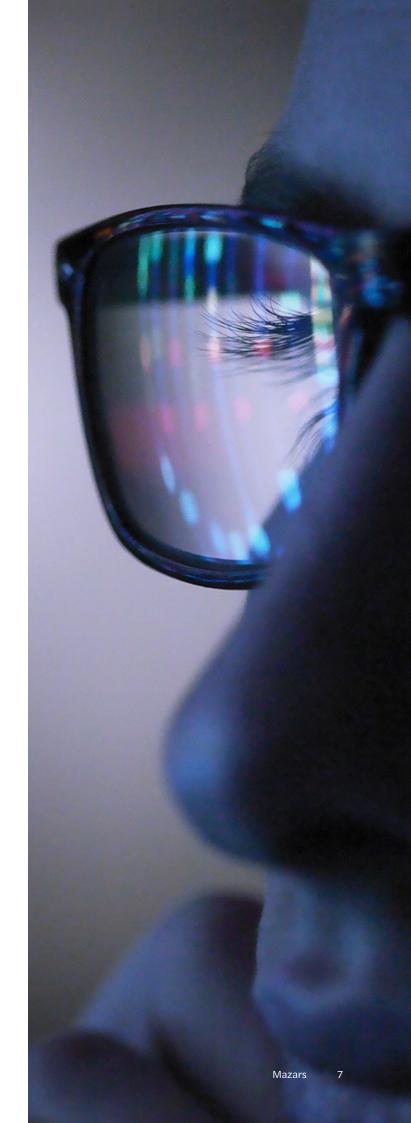


데이터 보안 적정성 논의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 사법총국 장관은 2021년 3월 30일(화) 오후 5시(유럽시간 오전 10시),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확인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은 연말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적정성 논의의 결과로, 추후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사급여 **탄력근로제 신설**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지난 1-2월호의 Regulatory updates에서 설명 드렸듯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및 임금감소 우려가 없도록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의무와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5~50인 미만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탄력근무제는 일이 많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구분	2주 이내 탄력근무제	3주 이상 ~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신설)	
대상 근로자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 사업 부분, 업종 직종별 적용 가능 • 적용제외 - 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효기간 설정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근로시간 합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단위기간의 주별근로시간 서면합의, 일별 근로시간은 근로 시작 2주 전에 통보되어야 함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의무	
근로제한	60시간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특정주에 48시간 초과불가	64시간 (52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특정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 초과불가		
비고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각 단위의 근로제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한 경우 또는 협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장시간에서 기본시간으로 전환하는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기본: 20, 연장:30 → 기본:32, 연장:18 			

주요 세율 및 보험요율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18년~2020년 귀속¹)
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46.2 %
10억원 초과	49.5%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4.2%
3000억원 초과	27.5%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월 평균보수 X 3.43% X 1.1152	월 평균보수X 3.43% X 1.1152
국민연금	월 평균보수 X 4.5%	월 평균보수X 4.5%
고용보험	월 평균보수 X (0.8% + 사업규모에 따른 추가보험료율)	월 평균보수 X 0.8%
산재보험	월 평균급여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0.7%~34%)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	월 평균보수의 약 9%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률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음.

9 Mazars 규제사항 업데이트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42,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쉽 26,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6,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1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Mazarians: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허영, 양지선, 심민규, 김온유, 신나래, 정한움

